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  
2021년도 정기이사회기록

- \* 일 시 : 2021년 03월 12일 (금요일) 15:00
- \* 방 법 : 전자적 방법 - 다자간 메신저(카카오톡)  
코로나19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
- \* 임원총수 : 이사 7명, 감사 1명
- \* 참석임원 : 이 \* \* 대표이사, 임 \* \* 이사, 박 \* \* 이사, 장 \* \* 이사,  
장 \* \* 이사, 김 \* \* 이사, 고 \* \* 이사, 이 \* \* 감사
- \* 불참임원 : 권 \* \* 감사

1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: 권 \* \* 사무국장이 재적 임원 총 9명 중 이사 7명 · 감사 1명 출석하였음을 게시하자 정관 제26조(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에 의거 개회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 \* \*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(이하 '본 재단'이라 한다) 2021년 정기이사회를 개회 선언한다.

2. 전회의록 낭독 : 전회의록은 종전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기에 낭독을 생략한다.

3. 경과보고 : 권 \* \* 사무국장이 2020년도 3차 임시이사회 이후 본 재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(이하 '본 시설'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[별첨자료 1]을 게시 한 후 경과를 보고한다.

4. 안건상정 : 권 \* \* 사무국장이 게시한 이 \* \* 의장이 본 재단 및 본 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자 박 \* \* 이사의 동의와 \* \* \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한다.

제 1호 : 2020년도 법인·시설 일반업무 및 회계 감사 결과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제 2호 : 2020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결산(안) 심의 · 의결의 건

제 3호 : 법인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(안) 승인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제 4호 : 기타 안건 심의 · 의결의 건.

## 5. 심의 · 의결사항

1) 안건 제 1호 : 2020년도 법인·시설 일반업무 및 회계 감사 결과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\* \* 의장이 상정하여 권 \* \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2]의 2021년 1월 26일에 개최한 본 재단과 본 시설의 2020년도 법인·시설 일반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에 관하여 이 \* \* 감사로부터 감사 보고를 하게 한 후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박 \* \* 이사의 동의와 김 \* \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2) 안건 제 2호 : 2020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결산(안) 심의 · 의결의 건.

이 \* \* 의장이 상정하여 권 \* \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3, 3-1, 3-2, 3-3]의 본 재단과 본 시설의 2020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결산(안)에 관하여,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아들일 것을 박 \* \* 이사의 동의와 장 \* \*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3) 안건 제 3호 : 법인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(안) 승인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\* \* 의장이 상정하여 권 \* \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4, 4-1] 시설의 법인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(안)에 관하여,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아들일 것을 박 \* \* 이사의 동의와 임 \* \*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6. 회의록채택 : 이상으로 심의·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\* \* 의장이 작성된 회의록을 권 \* \*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한 후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할 것을, 장 \* \* 이사의 동의와 박 \* \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7. 폐회선언 :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·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을 박 \* \* 이사의 동의와 장 \* \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, 이 \* \*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\* 기록자 : 사무국장 권 \* \* (인)

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.

2021년 03월 12일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
대표이사 이 \* \*  이 사 임 \* \* 

이 사 박 \* \*  이 사 장 \* \* 

이 사 장 \* \*  이 사 김 \* \* 

이 사 고 \* \*  감 사 이 \* \* 